전략물자 자율 수출관리 이행 준수

삼성전자주식회사

자율수출관리 이행

삼성전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준수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준수는 물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별표 1) 제도를 성실히 이행 중이며,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글로벌 수출통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내부 관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수출통제, 우려거래선 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출에 최선을 다하고, 자율점검, 외부감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율수출관리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삼성전자(이하 '당사'라 한다)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전략물자 관련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당사가 수출 통관을 하거나 본사 이전 거래를 통한 해외에서 해외로의 수출 거래와 기술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국제규범 등 무역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수출', '재수출', '수입', '무형기술이전' 등 관련 용어는 법령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제 4 조(기본방침)

당사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실효적인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독립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제 5 조(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대내외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 선언문(별표 2)을 통해 선언하여 전략물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한다.

제 6 조(위원회 및 사무국)

당사는 전사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율수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와 실제 전략물자의 수출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부 개발, 영업 · 구매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한다.

제 7 조(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취득)

제조, 개발 제품의 수출거래는 별표 3 의 순서에 따라 운영된다.

제 8 조(국내 거래 프로세스)

거래선에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통보하여 거래선이 해당 전략물자를 매각 · 수출 時 통보 ·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 9 조(우려거래자 확인)

신규 거래선 발굴 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우려거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우려거래자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약 진행을 중지한다.

제 10 조(감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간內 1 회 주기로 실시한다.

제 11 조(교육)

연간 교육 운영 계획에 의거, 사업부 실무조직 담당자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전략물자 관리원의 기본·전문 실무, 자율준수 과정과 사내 집합 교육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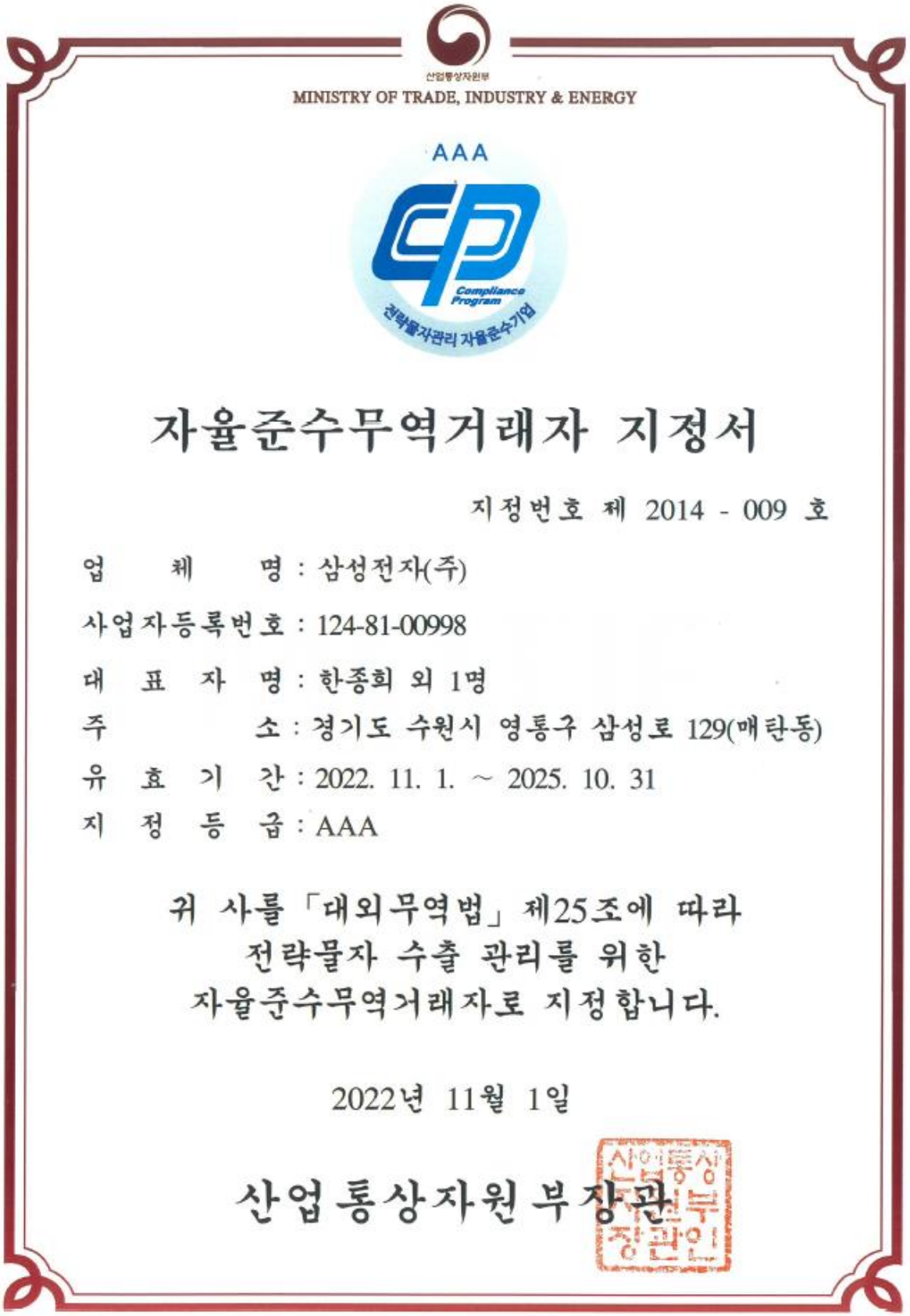
제 12 조(보고)

전략물자 이슈·규정 위반사항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생 즉시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제 13 조(정보통신 보안관리)

당사는 정보통신 보안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전략기술의 사외 이전을 통제·관리한다. 또한 사내 입출문 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외 유출을 방지토록 한다.

※ 별표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AA

Compliance Program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서

지정번호 제 2014 - 009 호

업 체 명 : 삼성전자(주)

사업자등록번호 : 124-81-00998

대 표 자 명 : 한종희 외 1명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유 효 기 간 : 2022. 11. 1. ~ 2025. 10. 31

지 정 등 급 : AAA

귀 사를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 별표 2.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 이행 선언문

SAMSUNG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 이행 선언문

당사는 기업의 신인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 전략물자의 수출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 조직과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모든 부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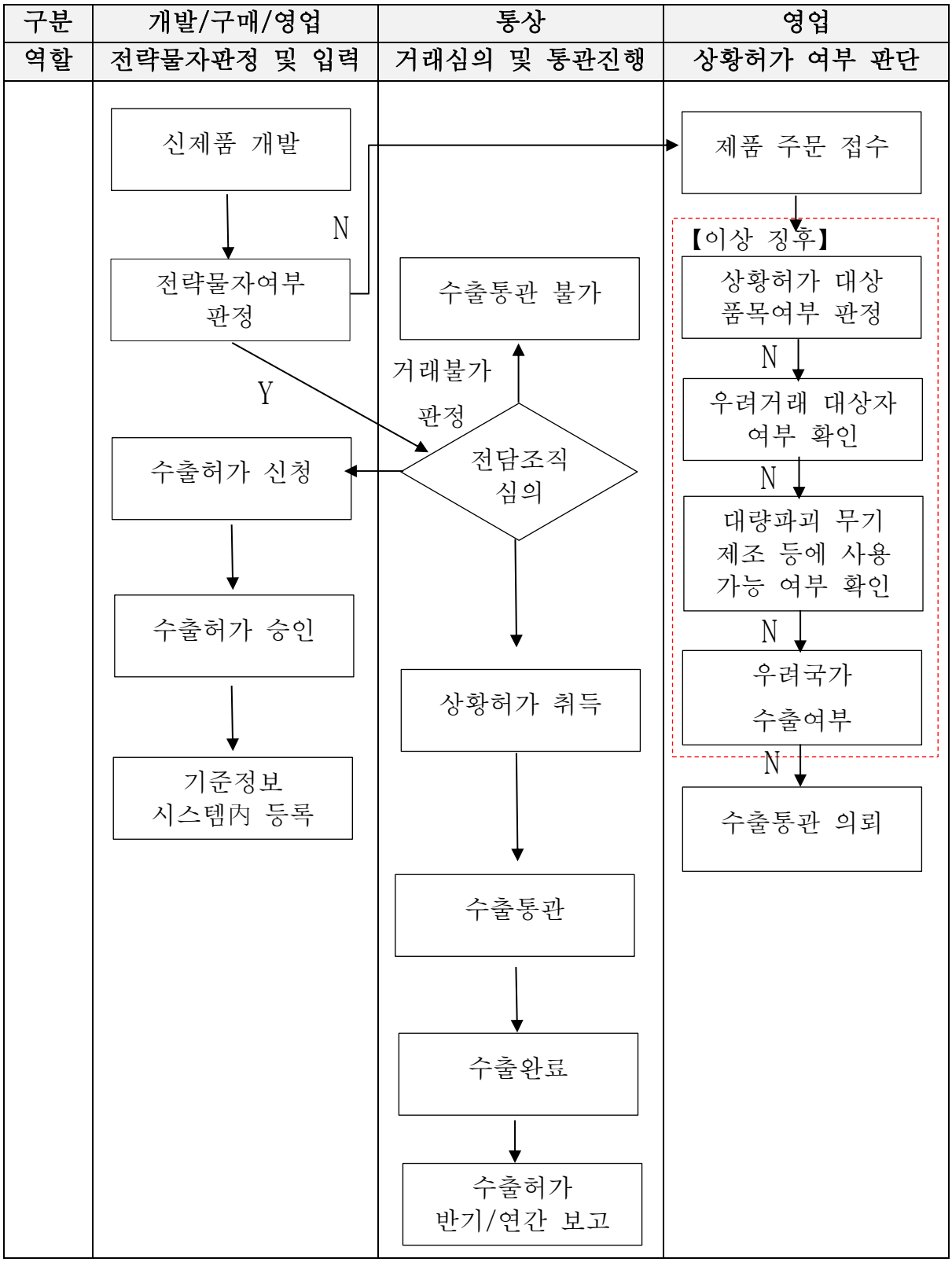
하나, 우리는 정부의 전략물자수출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5.06.02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전영현

※ 별표 3. 수출 거래도


구분
개발/구매/영업
통상
영업
역할
전략물자판정 및 입력
거래심의 및 통관진행
상황허가 여부 판단
신제품 개발
N
전략물자여부 판정
Y
수출허가 신청
수출허가 승인
기준정보 시스템內 등록
수출통관 불가
거래불가 판정
전담조직 심의
상황허가 취득
수출통관
수출완료
수출허가 반기/연간 보고
제품 주문 접수
【이상 징후】
상황허가 대상 품목여부 판정
N
우려거래 대상자 여부 확인
N
대량파괴 무기 제조 등에 사용 가능 여부 확인
N
우려국가 수출여부
N
수출통관 의뢰